
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임기제공무원 8급(기록물관리 전문요원) 채용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성동구임기제공무원 8급(기록물관리 전문요원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16일

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

채용분야	채용등급	인원	담당업무	계약기간
기록물관리 전문요원	성동구임기제공무원 8급	1명	-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·시행 -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-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- 기록물평가 및 기타행정업무 등	채용일로부터 2년 (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)

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 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(대통령령 제36487호, 2026. 6. 30.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(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)
-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

3. 응시 자격 요건

○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 65조(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 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
※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 ☞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만 18세 이상 병역필 또는 면제자

○ 응시분야 자격요건

○ 응시분야 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내 용
채용분야 자격요건	◦ 아래 [자격요건] 및 [경력요건] 각각 하나 이상 <u>동시 충족하는 자</u>
	[자격요건] :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8조 1.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.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.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	[경력요건]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※ <u>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</u>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5항) ※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

4. 보수 수준

○ 신규 임용자의 연봉책정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5조 제3항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하한액의 120% 범위에서 협의 결정하되, **하한액 지급을 원칙**으로 함.

○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

(단위:천 원)

구분	상한액	하한액	비고
8급(상당)	62,096	44,296	

※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【별표 13】에 의함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6. 10. 27.(화) ~ 10. 29.(목), <3일간>
※ 접수시간: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접 수 처: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(1층)
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이메일(hmlee@sd.go.kr)

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접시험		최종합격자 발 표
	일시	장소	
2026. 11. 2.(월) 예정	2026. 11. 6.(금) 예정	합격자 공고 시 공지	2026. 11월 중

※ 채용일정 및 장소는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 : 자격요건,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평가
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다. 최종합격자 발표: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첨부 1호 서식) 1부

- 응시수수료: 서울특별시성동구 **수입증지 5천 원**(구청 1층 민원여권과)

- ※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

○ 이력서(첨부 2호 서식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회사가 폐업·파산·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(첨부 3호 서식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첨부 4호 서식) 1부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 5호 서식)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첨부 6호 서식) 1부

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학위증명서) 1부(원본)

○ 주민등록초본 1부(병역사항 포함)

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(원본)

-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(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- 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

〈첨부7〉 ‘경력사실 확인 증명서’ 추가 제출
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

○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(해당자에 한함/원본 지참)

○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우편 및 FAX접수는 받지 않으며,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.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 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(☎02-2286-5218)